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나43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규훈

변론 종결 2020. 10. 29.

판결 선고 2020. 11. 26.

제 1 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9. 27. 선고 2018가소1034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3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4. 19. 피고와 C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1년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발생

1) 원고는 2007. 10. 3.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46km 지점을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1.4톤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원고 차량은 사고 직후사고지점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멈춰 섰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원고는 1차 사고 직후 원고 차량에서 빠져나온 다음, 두 차량은 그대로 둔 채운전해 온 방향으로 30m 정도 이동하여 다른 통행 차량들에게 수신호를 하였다.

2) F은 그 무렵 G 4.5톤 활어 운반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사고로 정차해 있는 원고 차량의 오른 쪽 부분을 들이받았고, 원고 차량은 밀리면서 뒤편에 멈춰 있던 D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오른쪽 갓길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3) H은 그 직후 I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지점 부근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 서 있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이하 '3차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에게 2007. 10. 29.~30.경 대인배상금으로 2,080,000원을 지급하고, D 소유의 화물차에 대한 대물배상금으로 2007. 11. 2.부터 2008. 1. 31.까지 8,691,000원(차량 3,125,000원 및 부품 5,566,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7. 11. 15. 피고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으로 대인배상 부분 200만 원, 대물배상 부분 50만 원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입은 손해는 1차 사고가 아닌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다. 피고도 당시 이를 알고 있어 보험금 지급 후 소송을 예정하고 있었던 만큼, 2차 사고 야기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액 상당을 구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및 보험처리를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1 음주운전사고부담금 250만 원과, 2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보험료 할증금액 9,338,230원(2007년 보험가입 당시의 보험료 1,002,970원과 2018년 보험가입시의 보험료 1,851,900원의 차액인 848,930원 × 11년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보임)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중한 상해를 입은 직접적 원인이 1차 사고보다는 2차 사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야기한 1차 사고로 인하여 새벽 시간 고속도로 2, 3차로상에 원고 차량과 D의 차량이 멈춰 서게 된 점 또한 2차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1, 2차 사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D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정당한 지급에 해당한다 하겠다.

2) 그런데 피고가 D에게 위와 같이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F 등 다른 사고 관련자로부터 금원을 구상함으로써 피고의 보험금 지출액이 원고가 납입한 음주운전사고부담금 금액을 하회하게 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3)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의 보험금 지급이 정당한 이상, 원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보험료 할증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이유 없다.

더욱이,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07. 10. 25.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동차보험계약이 해지된 점이 인정되고,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2007년 납입보험료 또한 계약 중도해지로 인해 감액 조정된 금액으로 보이고, 2018년 체결하였다는 보험계약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것인데, 보험가액등 계약내용도 다르며, 최근 3년간의 사고경력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산정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 및 보험처리가 보험료 산정 요인이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즉, 이 사건 사고 및 보험처리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료 할증금액 상당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런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민정, 판사 최진숙, 판사 호성호

1) 위 1과 2의 합계는 11,838,230원이 되는바, 원고는 음주운전사고부담금 250만 원을 두 번 합산한 금액인 14,338,230원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